

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2. 25.(목) 총 8매(본문5, 참고3)	
담당 부서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	담 당 자	• 과장 유상철, 사무관 김 일, 최현희 • ☎ (044) 201-4655, 4651	
보 도 일 시	2021년 2월 26일.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26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디지털지적·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- 2030년까지 스마트지적 완성...「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(21~30)」 시행 -

- 미래지향적 지적제도, 민간 일자리 창출, AI 신기술 활용 등 추진과제 제시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“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(2021~2030)”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*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.

* 국토교통부장관(위원장), 관계부처(실·국장급), 민간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

○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, 연도별 투자계획,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, ‘지적재조사특별법’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*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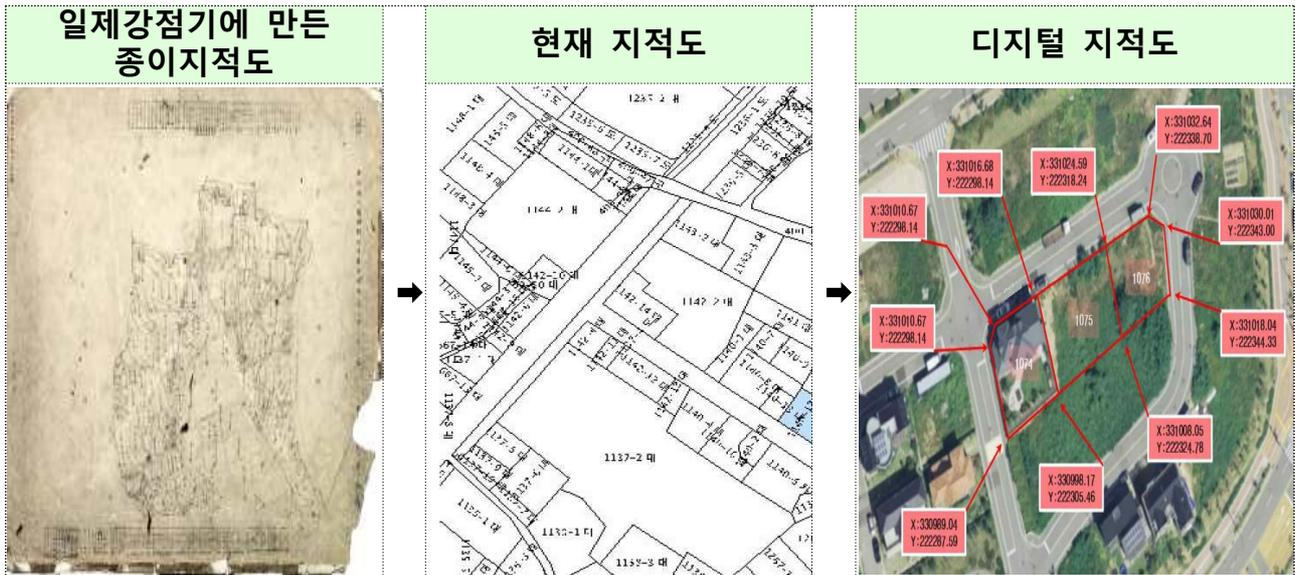
* (그간 경과) 최초 기본계획 수립('13.2월) → 제1차 기본계획 수정·고시('16.3월)

○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, 드론·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하였다.

○ 특히,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되고,

-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.

< 디지털 수치좌표에 의한 디지털지적도 >



- 또한, 이번 수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·민간·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.
-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(2021~2030)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, 민·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,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·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.
- ‘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’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,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.
-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,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, 입체지적제도 도입(안)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.

-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, 산·학·연·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, 공간정보 융·복합 활용, 드론·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.

<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(2021~2030) >



[전략1]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

-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*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,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.

*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(전 국토의 14.8%에 해당)

- 기존 점과 선에 의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.
-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·복합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,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- 디지털뉴딜 과제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*하고,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.

* 부정형 토지 → 정형화, 굴곡진 경계 → 직선화, 조정금 과다발생 → 조정금 최소화

[전략2]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

- 지난 해 ‘지적재조사특별법’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,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%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‘25년까지 약 50%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지적측량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우리나라는 드론, 지적위성측량(GNSS)* 등의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(12~30년)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, 그간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.

* 지적위성측량(GNSS,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) :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·고도·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

[전략3] 디지털지적 성과 확산

-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하여, 토지이용계획, 농·산지 관리,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·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.
- 현재 운영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(바른땅시스템)을 개편하여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,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(지적재조사기획단장)은 “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(2021~2030)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하면서,
 - “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“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(2021~2030)”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, 바른땅시스템(www.newjijuk.go.kr)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김 일, 최현희 사무관(☎ 044-201-465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참고 2

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(2021~2030) 수립 경과

- (수립배경)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재정투입 여건, 드론 등 측량기술의 발달 및 지능형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
- (관련근거)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,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도록 규정(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)

* 최초 기본계획 수립('13.2.27, 제1차), 기본계획 수정·고시('16.3.25, 제2차)

< 최초 기본계획 수립('12~'30) >	< 기본계획 수정('16~'30) >
<p>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전략을 제시하고, 9개 중점과제를 도출</p>	<p>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바른 지적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, 10개 중점과제를 도출</p>

- (그간 추진경과)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'19.5~'20.10) → 전문가 자문회의 → 전자공청회(11.13~11.29) → 관계기관 의견조회(11.13~12.12)
- (기본방향) 지적재조사 본격 확산, 디지털 뉴딜 선도, 민주적 참여 확대 등 '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'을 위한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발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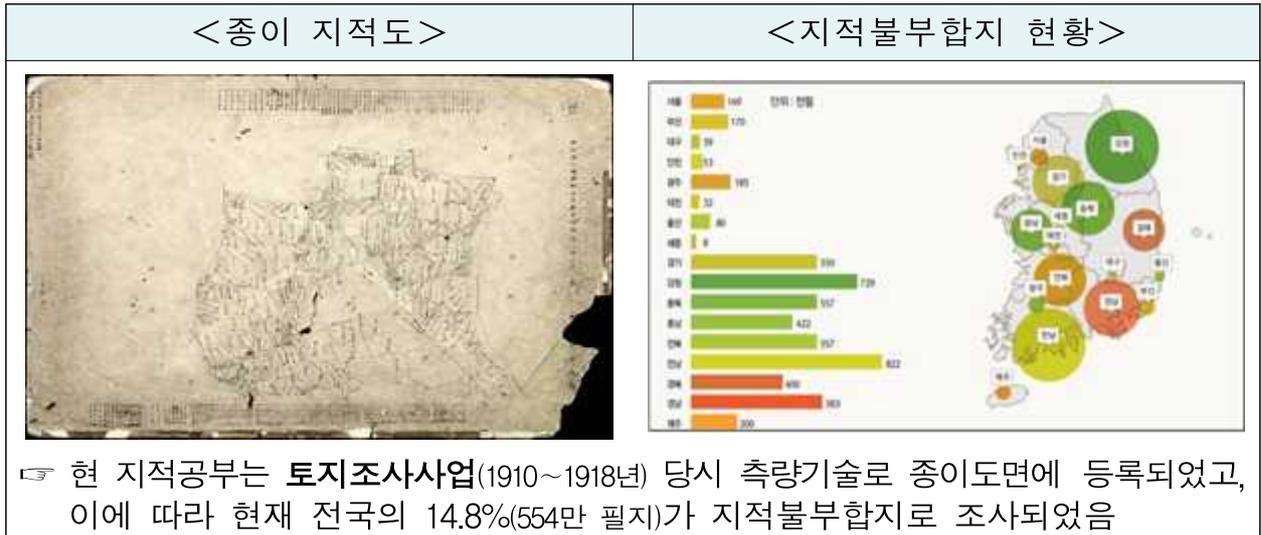
* 비전 및 목표는 '제1·2차 기본계획'의 기초를 유지하였으며,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는 기존의 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·보완

참고 3

지적재조사 사업개요

- (추진배경)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·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*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

*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



- (사업내용)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

사업대상	사업기간	총사업비	근거법령
554만 필지 (전국 3,743만 필지의 14.8%)	'12 ~ '30 (19년간)	1조 3천억 원 ('12년 예타)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'11. 9. 16. 제정)

- (추진체계 및 절차) 국토부(기본계획 수립, 사업관리), 시·도(지구 지정), 시·군·구(경계확정, 조정금산정), 지적측량수행자(일필지조사 및 측량)

